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원의 주지)

기본법 제 5 조 : 민법 제 31 조, 823 조

신문은 독자들에게 처참한 살인사건의 조사상황에 대한 보도와 그 상황하에서 제기되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그 범죄가 정치적인 배경에서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정당하고 올바르게 관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여는 허위적이거나 경박하게 보도되거나 또는 증명할 수 없는 비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직 진실에 근거한 사실보도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1978 년 8 월 30 일부터

10 월 12 일까지의 판결.

(사실개요)

한 금융인 위르겐 폰토씨의 피의사건 후에 본 인권대해사건의 원고인 엘레오나레 포엔스겐이라는 여대생이 폰토 씨 피살사건의 혐의자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7 인으로 구성된 그룹의 대질과정에서 그녀는 피살자의 부인과 운전사로부터 그 살해음모를 계획한 여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강력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었다. 이 원고는 범행이 행해지는 그 시점에 범행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알리바이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시키는 많은 증인들을 제시했다. 1977 년 8 월 2 일 연방검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의 이름을 밝힌 보도내용을 신문에 제공했다. 취조판사는 합작살인, 공갈유괴, 인질, 형법상의 범죄모의 등으로 그녀에 대해 구속령을 내렸다. 검사의 광범위한 취조에서 범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이 원고는 전차여행 중이었다는 알리바이를 확인시켜주는 한 전차차장이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오버 우어셀에서 있는 살해음모의 바로 전에 프랑크푸르트의 한 신발가게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두 명의 증인이 출두했다. 몇몇 부재증명의 증언들은 원고의 변호인이 이미 밝힌 바 있는 주장내용과 꼭 일치했다.

연방검사장은 1977 년 8 월 7 일자 신문보도에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알리바이를 확인시켜 주었던 증인들이 취조와 상황에 따라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또 이 보도 내용에서 연방검사장은 『피살자의 미망인과 운전사의 증언들이 알리바이 증언들과 대치되므로 이 원고에 대한 현존하는 범죄모의는 더 이상의 신빙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석방되어야 한다』 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석방되었다.

이 원고는 첫번째로 빌트자이통지의 법인체인 악셀 스프링거사와 빌트자이통지의 편집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빌트자이통지가 이 사건에 관해 1977 년 8 월 3, 4, 7, 8, 9 일자에 연이어 보도했는데 그것이 원고의 인권침해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빌트자이통지는 1977 년 8 월 3 일자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 면 기사 『폰토 씨 피살 : 그 공포의 소녀 체포』

「폰토 씨 살해자들에 대한 수사의 첫 번째 큰 성과 :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하숙집에서 일요일 저녁에 23 세의 엘레오노레 포엔스겐은 체포되었다…」

2 면 기사 : 「엘레오노레 포엔스겐은 명문가 출신 아가씨다. 그녀의 아버지는 뮌헨 지방법원의 청소년부 의장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교사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러나 겨우 이틀 후에 금융인 폰토 씨는 그의 별장에서 살해되었다. 현재 확인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대자 수잔네 알브레흐트와 그녀의 친구인 엘레오노레 포엔스겐과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악수를 청했다. …… 곧이어 그곳에서 그들은 그를 살해했다. 포엔스겐은 지금까지 테러리스트의 동조자로서 지목을 받아왔다. 」

8 월 4 일자 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폰토 씨 피살사건」 제하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포엔스겐에 대해서 심지어 길거리에서조차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이고 그 테러리스트의 아버지는 그녀가 매우 동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제소인의 아버지의 인간적인 신상면에 관해 상세한 언급이 있었고 또한 친감에 대해서도 상당한 설명이 있었다. 그 하단에는 원고의 사진이 「검사관에 의해 호송되어 구치소로 향하는 엘레오노레 포엔스겐」이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8 월 7 일자 판에서는 「진짜 테러리스트인 엘레오노레 포엔스겐은 과연 어떤 여자인가?」라는 제목이 붙은 하나의 큰 초상이 게재되었다.

8 월 8 일자 판에서 빌트자이통지는 또 다른 음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폰토 씨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구속령철회』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고 있었다.

「폰토 부인과 운전사가 체포되어 있는 포엔스겐이 살인범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속령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포엔스겐은 다시 석방되었다. 몇 명의 증인들이 범행시간에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차차장도 그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연방경찰은 부재증언의 확실한 문구들이 부분적으로 글자 그대로 포엔스겐의 변호인들이 이미 주장한 내용들과 일치했다는 사실에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23 세의 처녀는 아직도 여전히 용의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강력하고 직접적인 범죄행위용의는 갖고 있지 않다.」

8 월 9 일자 판에서 빌트자이통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구속령은 조건없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포엔스겐은 사전에 경찰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도 완전히 용의를 벗은 것은 아니라고 피셔 연방검사는 어제 말했다.」

베일에 싸인 폰토 미망인의 사진 옆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폰토 부인은 믿고 있다. 포엔스겐이 범행현장에 가담했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명백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확인했다. 폰토 부인은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지난 금요일 기사지에 표명했다…」

이 인터뷰와 같이 원고에 대한 8 명의 부재증인들의 사진과 함께 출판한 신상기록이 게재되었다. 폰토 부인은 원고가 석방된 후 형사경찰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사당국에도 피살사건과 관련된 더 이상의 사실적인 진술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녀가 범죄모의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했다거나에 관한 증명은 폭넓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가 1975년 12월에 범죄모의에 가담한 화의를 받은 적은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녀는 시위와 무단가택점거에 참가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조사절차는 중도에 (1976년 2월) 취하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원고가 범죄모의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유력한 증명자료는 되지 못했다.

1977년 8월말에 원고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심한 정신분열증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더욱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침해상태의 고통을 당해야 했던 원고는 장기간의 정신용법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서 그녀의 학업은 1년간 더 연장되어야 할 정도로 그녀의 사고력과 학업의욕은 심하게 침해를 받았으며 게다가 그녀는 입수가 가능한 학습보조자료를 구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만 마르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지방법원은 이 소송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판결요지)

제소는 이유있다. 피고는 연대채무자로서(민법 제 840 조) 악셀 스프링거 사는 민법 제 823 조 31 조에 따라, 편집국장 권터 프린쯔씨는 민법 제 823 조에 따라 5만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피고는 민법 제 1 장 제 823 조에 명시된 보호에 관한 「그 이외의 권리」로써의 원고의 명예와 인권을 보도하는 태도와 방법이 위법이며 유죄이다.

1977년 8월 3, 4, 7 일자 빌트자이통지에서 원고는 테러리스트로 보도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 지금까지 확인된 바와 같이 그는 ...포엔스겐에 친절히 악수를 청했다...순간적으로 그녀는 그를 살해했다」 같은 표현으로 위르겐 폰토 씨의 살인을 완전히 인정하는 관점에서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피살자의 미망인의 진술을 통한 재반복에 의해 「... 포엔스겐은 범행현장에 있었다...나로서는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포엔스겐은 내 남편의 살해행위에 가담했다! 나는 그녀가 범인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주장들로부터 뒷받침되었다.

마찬가지로 빌트자이통지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명백히 폰토 씨를 살해했으며 또한 그녀는 현 정치체제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전복하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의 현직 국회의원에게까지 정치적 음모와 폭행을 서슴지 않으며 다양한 행동으로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치적 무리와 한패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하나의 견해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명백한 하나의 진실된 사실로서 특정지워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접근될 수 있는 사건의 경과 내지는 상황이 증거근거의 일부로서 제시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원고는 품위가 실추되었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진술과 원고의 인물묘사에 있어서의 왜곡된 사실주장은 형법 제 193 조에 의거, 진실로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조에 5 항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신문은 충격적인 살인사건에 대한 거사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실하게 보도하고, 누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건이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발생했는지의 여부 등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오직 진실보도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허위 또는 경박하게 제시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주장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폰토 씨 살해사건에 원고가 가담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가 테러리스트라는 주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장들을 위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다만 1975 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데모와 무단가택점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참여는 원고가 테러의 살인현장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한다. 더구나 원고는 현재 뿐만 아니라 거사과정이 미진상태이었던 그 당시에는 범죄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앞서 제기된 증거능력이 없는 주장들은 경박하게 제시된 것이었다. 또 폰토 씨 살해에 관한 그녀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1977 년 8 월 2 일 연방검사장의 공식발표의 공개 전에 빌트 자이통지에서도 원고가 요청한 일련의 증인들이 알리바이를 부분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활자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금융인 폰토 씨의 공모살해자로써 그리고 테러리스트로서 묘사되는 진실과는 다른 경솔한 주장들이 있었다. 빌트자이통지에 보도된 근거가 희박한 비진실성의 주장들에 있어 피고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 피고(빌트자이통지의 편집국장)의 책임성은 그가 편집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와 같은 지위에서 그는 개개 기사가 제 3 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되도록 편집 전반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자신 스스로가 원고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직접 작성하거나 교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직위에 속한 책임과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속에 그의 과실이 있다. 첫째 피고 (악셀 스프링거 사)에게는 민법 제 31 조에 의해 인권침해의 책임이 돌려진다. 법원 민사부는 이 점에 있어서 연방법정의 판시에 따른다(법조신개, 1965 년, 411). 연방법정에 따르면 관련자의 심한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 있는 보도에 있어서는 입헌적 조직체인 언론기관도 항상 민법 제 31 조에 따른다. 왜냐하면 그 조직체내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인 책임성을 규제받는 개인이 사건을 취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그 기관이 기업적인 조직체로서 헌법 31 조에 의거 불완전한 것일 경우에도 그만큼 사회의 입헌적 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판결은 유보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피고는 민법 제 823 조, 31 조 또는 민법 제 823 조에 의거, 적어도 명백한 과실을 범했다. 피고가 연방검사로부터 거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살인 및 범죄모의의 가담에 대해 원고의 공동정범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주장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입장을 확인진술할 여지도 있었다는 것을 피고는 알았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관련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대두가 특히 더욱 중대하고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독자들은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죄의 문책 또한 그 때문에 특히 어렵다. 이것은 죄의 문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과도한
필요성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는 발단에서부터 형의
집행부분까지도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가 언제든지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에 의해 되고 불법적인 유죄를 인정할 만한 인권침해는 피고에 의한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다. 각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없고 또 가해자에 의해 중과실 혹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현저하고 무거운
침해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금전상의 배상요구가 주어진다(민사상의
연방법정판결. 35. 363.)

이러한 판결이 시행된다.

피고의 경우와 같은 중대사건에 있어서의 피해보상이 취소, 반대해명보도 만으로 혹은 다른
어떤 방법만으로 해결된 적은 과거나 현재나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는 면책증언의 근거에서 원고에 대한 구속령 철회에 관해 8월 8일자 판에 보
도했는데 이 보도만으로는 고통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는 적합치
못했다. 원고가 범행모의에 가담하여 살해한 사실로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는 내용이 금은
표제로 보도되어진 후에 구속령 해제에 관한 보도가 「죽음의 공포, 폰토 부인 미국으로
도피」라는 제하에 덧붙여 이어졌다. 원고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쨌든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던
보도의 정도에 상응할 만한 정정보도태도와 사전공표의 준비과정에 있을 때 원고의 석방에
관한 기사의 게재가 따랐다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자들에게 원고가 반대증언들의 불확실과 신빙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석방된 것을 마치 피살자의 미망인과 운전사가 잘못 증언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정도로 어떤
증언의 확실한 진위를 규명함에 접근하기 위한 연방검사장의 재발표를 단어의 선별을 통해
굵은 활자체로 보도했다.

또한 8월 9일자 판에서, 전술한 보도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거나 줄이기 위해
피고는 아무런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원고의 범행근거를 밝히려는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잠적한 폰토 씨 미망인의 사진 밑에는 「나는
확신한다……」라고 보도되어 있다. 이것은 원고를 석방하게 한 증인의 진술이 있는
이후에도 폰토 부인이 자신의 이전의 진술을 재차 표명하여 더욱 확인하여 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 잘못된 인상은 「그녀가 지난 금요일에 그것을 다시금 주장했다…」라는
문장을 통해 더욱 보강된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이라고 할 경우에는 석방전의
날짜였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이것이 독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기
때 때문이다. 그리고 알리바이 증언의 일부가 점차적으로 독자에게 알려짐에 따라 그
보도태도는 계속되는 보도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는 가정과
명백히 배치된다. 사진대조와 개개 알리바이 증인들에 대한 묘사방법은 마치 테러리스트의
체포에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들과 거의 흡사했다. 자세히 말해 더욱 뚜렷한 사실은 원고에
대한 옹호부분을 독자에게 믿지않게 하려는 것처럼 한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고

신중한」증인이나 전차차장의 증언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학생들의 증언들만이 주로 게재되었다.

언론상의 인권침해를 보상키 위해 취소의 방법이나 정정보도는 불충분하고 적합치 않을 경우가 많다. 폰토 씨의 살해모의는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문제의 재론을 통해 그간에 당시의 배경에까지 언급되어 제기된 제소나 고발들이 공공적인 이해관계의 중심 영역에서 새로이 부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문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고가 1977년 8월에 현실적으로 긴급히 예상될 수 있는 범죄용의는 있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확인될 수 없었다고 보도한다 할지라도 독자들이 이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지 혹은 원고에 대한 그들의 기존판단을 수정하게 될런지는 매우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독자들은 1977년 8월 수일간에 걸쳐 살인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표현된 포엔스겐에 관한 보도를 접한 후 그들의 확고한 판단체계내에 고정되어 어떤 정정보도나 취소에도 변경되기 어려운 원고에 대한 자신들의 이미지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포엔스겐이란 이름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폰토 씨 살해사건과 관련되어 취급될 것이며 사건현장에 가담의 문제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또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테러와 살해현장)에 원고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는 독자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판결 확정된 손해배상청구의 액수의 결정에 있어 이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중기능을 갖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는 마땅히 그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한 물질적 보상을 해 야 하고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해 법적 강제력에 관계없이 정신적 보상도 해야 한다(벤젤, 사진기사보도법, 1967, Seite 315 mwN). 배상의 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의 문제가 되는 조건들은 책임의 정도와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살인자이다 또는 테러리스트이다라고 하는 비난은 지금이나 그 때나 마찬가지로 극심한 테러음모 사건에 있어서만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무거운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고와 관련된 여러 사실주장들이 한 판에 수백만부씩이나 발행되어 독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많이 읽히는 일간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적인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부재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표현에 있어 「~하다면, 그러나」 등의 용어를 전혀 사용치 않고 원고를 살인자 또는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이러한 진실이 결여된 경박한 보도가 단순히 신문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또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행해졌는지는 미확인 상태다.

어쨌든 인권침해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1년 이상씩이나 고충을 겪어야 했던 중대한 과실은 명백한 것이다. 결국 악셀 스프링거사의 경제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원고가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경제상황에 비추어 5만 마르크 정도의 배상액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원고의 건강에 끼친 피해와 또 그 밖의 물질적인 손실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원고가 그 정도까지는 피고들의 보도로 말미암아 피해가 야기되었다고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에 의해 그녀의 사진의 공개하에(물론 살인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묘사에 대해 조금의 제한이나 축소도 없이) 각종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구금과 그에 따른 심문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불안정한 정서적 상태에 비추어 건강상의 심한 악영향을 입혔으며 동시에 물질적인 손실도 끼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피고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 그 자체는 전술한 내용들에 의거, 피고들의 공개를 통해 마땅히 5만 마르크의 손해배상액 판정을 정당화한다.